

##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	-----	---------

신청인	제작자명	제작자등록번호
	대표자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사업장 소재지

사용하려는 표기부호	둘째 자리											
	셋째 자리	부호										
		표기 차종										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

( 서명 또는 인 )

**국토교통부장관**   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연간 2천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·조립한 실적 (신규 제작·조립자의 경우에는 연간 제작·조립계획대수를 말합니다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다만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 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1부 2. 표기시행계획서(표기의 배열·위치·각인관리요령·표기시행장소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 야 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.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